

VIAC || Vienna International
Arbitral Centre

VIAC VIAC VIAC VIAC VIAC VIAC VIAC **중재규칙** VIAC VIAC VIAC
및 조정규칙

비엔나규칙 및 비엔나조정규칙 2018

간기

발행인: 오스트리아 연방 경제회의소
Wiedner Hauptstraße 63, 1045 Vienna

그래픽: LUCID Design & Werbung
Pilgramgasse 17/26, 1050 Vienna, www.lucid.at

번역: 권인화 Innhwa Kwon (zeiler.partners Rechtsanwälte GmbH)

비엔나국제중재센터 중재 및 조정규칙의 여러 번역본된 가운데
오직 영문판과 독문판이 공식규칙이다.

비엔나국제중재센터 중재 및 조정규칙 2018
초판발행 (2018 년 1 월)

인쇄: AV+Astoria Druckzentrum
Faradaygasse 6, 1030 Vienna

증재규칙

비엔나규칙 | 2018 년 1 월 1 일 시행



조정규칙

비엔나조정규칙 | 2018 년 1 월 1 일 시행

목차

제 1 장	중재규칙	9
총칙		10
제1조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기능 및 비엔나규칙의 적용	10
제2조	이사회	10
제3조	국제자문위원회	11
제4조	사무국장 및 사무국	11
제5조	언어	12
제6조	정의	12
중재의 개시		13
제7조	중재신청서	13
제8조	중재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14
제9조	반대청구	14
제10조	등록비용	15
제11조	중재기록의 송부	15
제12조	송달, 기한 및 서면제출	16
제13조	대리인	17
제 3 자의 인입 및 절차의 병합		17
제14조	제 3 자의 인입	17
제15조	절차의 병합	18
중재판정부		18
제16조	일반사항	18
제17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19
제18조	다수당사자 절차에서 중재판정부의 구성	20
제19조	중재인 지명의 확인	20
제20조	중재인 기피	21
제21조	중재인 권한의 조기종료	21
제22조	중재인 권한의 조기종료의 효과	22
전문가 기피		23
제23조	전문가 기피	23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23
제24조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23
중재 절차	23
제25조 중재지.....	23
제26조 절차의 언어.....	24
제27조 준거법과 우의적 중재인	24
제28조 중재의 진행.....	24
제29조 사실관계의 확인	25
제30조 구술심리.....	25
제31조 이의권.....	25
제32조 심리의 종결.....	25
제33조 임시처분 및 보전처분 / 중재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26
제34조 절차의 종료 사유	27
제35조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27
제36조 중재판정.....	28
제37조 화해중재판정.....	28
제38조 비용에 대한 결정	29
제39조 중재판정문의 정정, 해석 및 보충.....	29
제40조 중재판정부로의 이송	30
제41조 중재판정문의 발간	30
비용	30
제42조 예납.....	30
제43조 추가 절차비용의 예납	31
제44조 절차비용의 구성 및 계산	31
기타 규정	33
제45조 신속절차.....	33
제46조 면책.....	34
제47조 경과규정.....	34

제 Ⅱ 장	조정규칙	36
제1조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기능과 비엔나조정규칙의 적용	37
제2조	정의	37
제3조	절차의 개시	38
제4조	등록비용	39
제5조	장소	39
제6조	절차의 언어	39
제7조	조정인 선정	40
제8조	예납과 비용	40
제9조	절차의 진행	41
제10조	절차의 병행	42
제11조	절차의 종료	42
제12조	비밀유지, 증거능력 및 후속절차에서의 대리	43
제13조	면책	44
제14조	경과규정	44
제 Ⅲ 장	중재규칙과 조정규칙의 부칙	45
부칙 1	표준조항	46
	표준중재조항	46
	표준조정조항	47
부칙 2	이사회의 내규	48
부칙 3	요금표	49
부칙 4	선정권자로서의 비엔나국제중재센터	51

제1장



중재규칙

비엔나규칙 | 2018 년 1 월 1 일 시행

제장: 중재규칙 (“비엔나규칙”)

총칙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기능 및 비엔나규칙의 적용

제 1조

(1) 비엔나국제중재센터(약칭 “VIAC”)는 오스트리아 연방경제회의소¹ 산하의 상설 국제중재대표기구이다. 비엔나국제중재센터는 국내 및 국제중재 외에 다음에 대한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을 시 다른 대안적분쟁해결 조치에 따른 절차들을 사무관리한다.

- 1.1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중재규칙(“비엔나규칙”)
- 1.2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조정규칙(“비엔나조정규칙”)
- 1.3 그 외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권한

(2) 당사자들이 분쟁의 발생 전 또는 후 언제든지 그 분쟁을 비엔나규칙에 따라 중재로 회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중재 개시(제 7 조 제 1 항) 당시 시행 중인 비엔나규칙이 적용된다.

(3) 이사회는 중재합의가 비엔나규칙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절차의 사무관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사회

제 2조

(1)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이사회는 최소 다섯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이사진들은 비엔나국제중재센터 회장의 추천을 받아 오스트리아연방경제회의소 확대수석위원회에 의해 최장 5 년의 임기로 선임된다. 이사진들은 연임하여 선임될 수 있다.

(2) 이사회의 이사진들은 그들 가운데 회장 1 인과 부회장 최대 2 인을 선출한다. 회장 유고 시 이사회의 내규(부칙 2)에 따라 부회장 중 1 인이 그 직을 승계한다.

(3) 이사회의 이사진들 가운데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관리 하의 중재에 어떤 자격으로건

¹ 경제회의소에 대한 연방법령(“Wirtschaftskammergesetz 1998”), 연방법관보 I 1998 년 제 103 호(연방법관보 I 2017 년 73 호에 따라 수정), 제 139 조 제 2 항에 의거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자는 해당 절차와 관련한 심의나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출석하거나 참여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이사회의 정족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사회의 이사진들은 최선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이며 어떠한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들은 직무 수행 중에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5) 이사회는 자체적으로 내규(부칙 2)를 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국제자문위원회

제3조

국제자문위원회는 이사회에 의해 초빙된 국제중재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국제자문위원회는 자문 역할로 이사회를 지원한다.

사무국장 및 사무국

제4조

(1) 비엔나국제중재센터 사무국장과 사무부국장은 비엔나국제중재센터 이사회의 추천을 기반으로 오스트리아연방경제회소 확대수석위원회에 의해 최장 5 년의 임기로 선임된다. 사무국장과 사무부국장은 연임이 가능하다. 사무국장과 사무부국장은 임기만료 시점에 임명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차기 임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직을 유지한다.

(2)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사무부국장의 지휘 아래 이사회의 고유업무를 제외한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관리사무를 수행한다. 사무부국장이 선임된 경우, 사무국장의 유고시 또는 사무국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 사무부국장이 사무국장의 권한 범주 내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사무국의 구성원들 가운데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관리 하의 중재에 어떤 자격으로건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자는 해당 절차와 관련한 심의나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출석하거나 참여하여서는 안된다.

(4) 사무국장과 사무부국장은 최선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그들은 직무 수행 중에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5) 사무국장과 사무부국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 이사진들은 그들 가운데 해당 직무를 수행 할 1 인을 임명한다.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피임명자가 사무국장으로서 직을 수행하는 동안 그의 이사회 이사로서의 자격은 정직된다.

언어

제5조

당사자들과 이사회 및 사무국 간의 교신은 독일 또는 영어에 의한다.

정의

제6조

(1) 비엔나규칙에서

- 1.1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중재신청서 상의 1 인 또는 복수의 신청인들, 피신청인들, 또는 중재에 참가한 1 인 또는 복수의 제 3 자를 말한다.
- 1.2 **신청인**은 1 인 또는 복수의 신청인을 말한다.
- 1.3 **피신청인**은 1 인 또는 복수의 피신청인을 말한다.
- 1.4 **제 3 자**는 계류 중인 중재에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아닌 자로서 해당 중재에 입입 신청을 한 1 인 또는 복수의 제 3 자를 말한다.
- 1.5 **중재판정부**는 단독중재인 또는 3 인중재인단을 말한다.
- 1.6 **중재인**은 1 인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말한다.
- 1.7 **배석중재인**은 의장중재인을 외의 중재인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 1.8 **판정**은 종국, 일부 또는 잠정 판정 모두를 말한다.
- 1.9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의 유고시 또는 사무국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로 사무부국장이 결정을 내리는 범위에서 사무부국장 역시 포함한다.

(2) 비엔나규칙에서 자연인을 지칭하는 모든 용어들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된다. 실무에서 이 규칙의 용어들은 해당 성별에 맞게 사용한다.

(3) “조항”에 대한 참조에 구체적 세부내용이 없는 경우 비엔나규칙의 관련 조항이 해당된다.

증재의 개시

증재신청서

제 7 조

(1) 증재절차는 증재신청서의 제출로 개시된다. 증재절차는 비엔나국제증재센터 사무국 또는 오스트리아지역경제회의소에 증재신청서가 서면방식 혹은 전자방식(제 12 조 제 1 항)으로 접수된 일자에 개시되며, 이로써 절차는 계류 중이 된다. 사무국은 당사자들에게 증재신청서의 접수를 알린다.

(2) 증재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1 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및 기타 연락처

2.2 사실관계 및 구체적 청구취지

2.3 청구취지가 특정 총액에 국한된 경우가 아니라면 증재신청서 제출 당시의 각 개별 청구의 금전적 가치

2.4 제 17 조에 따른 증재인의 수와 관련한 사항

2.5 3 인 증재인단이 합의되었거나 이를 요청하는 경우 증재인의 지명, 또는 이사회에 의한 증재인 선정의 요청

2.6 증재합의와 그 내용에 대한 사항

(3) 증재신청서가 동조 제 2 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무국장은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해당 미비점들을 보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증재신청서 또는 첨부자료의 부수가 부족한 경우(제 12 조 제 1 항), 사무국장은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부족한 부수를 보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지정 기한내에 보정명령을 준수하는 경우, 증재신청서는 처음 접수된 일자에 적절히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이 지정 기한 내에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사무국장은 절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제 34 조 제 3 항). 이는 신청인이 동일한 청구를 추후 다른 절차에서 제기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사무국장은 동조 제 3 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내려진 바 없거나 그러한 명령을 신청인이 준수한 경우에는 증재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한다. 사무국장은 신청인이 동조 제 3 항에 의거한 보정명령을 준수할 때까지 피신청인에게 증재신청서의 송달을 보류할 수 있다.

중재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제 8 조

- (1) 사무국장은 중재신청서의 송달과 함께 피신청인에게 30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사무국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 (2) 답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2.1 피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기타 연락처
 - 2.2 중재신청서의 청구취지와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및 피신청인의 구체적 청구취지
 - 2.3 제 17 조에 따른 중재인의 수와 관련한 사항
 - 2.4 3 인 중재인단이 합의되었거나 이를 요청하는 경우 중재인의 지명, 또는 이사회에 의한 중재인 선정의 요청

반대청구

제 9 조

-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청구는 반대청구로서 동 절차에서 제기될 수 있다.
- (2) 제 7 조 및 제 10 조는 반대청구에도 적용된다. 사무국에는 예납금의 납부가 이루어진 후 반대청구를 중재판정부에 전달한다.
- (3)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경우 반대청구를 사무국에 반송하여 별개의 절차에서 처리되도록 할 수 있다.
 - 3.1 당사자들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또는
 - 3.2 답변서 이후 제출된 반대청구가 본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4)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에게 반대청구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 8 조는 반대청구에 대한 답변서에도 적용된다.

등록비용

제 10 조

- (1) 신청인은 부칙 3 에 규정된 제경비를 제외한 등록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추가 당사자의 인입 시(제 14 조), 해당 요청을 하는 당사자가 등록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 (2) 중재의 당사자가 둘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비용은 최대 50 퍼센트까지 추가 당사자마다 10 퍼센트씩 인상된다.
- (3) 등록비용은 반환되지 않는다. 등록비용은 납부당사자의 예납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4) 중재신청서와 추가 당사자의 인입신청서는 등록비용의 완납이 이루어진 후에 한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사무국장은 필요시 등록비용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입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무국장은 절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제 34 조 제 4 항). 이는 신청인이 동일한 청구를 추후 다른 절차에서 제기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5)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 동일한 본안에 관한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가 비엔나규칙에 따른 중재절차의 이전, 진행 중, 또는 이후에 개시된 경우, 후순으로 개시된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재기록의 송부

제 11 조

사무국장은 다음의 각 사항들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만 기록을 중재판정부에 송부한다.

- 사무국이 제 7 조의 요건들에 따른 중재신청서(반대청구서)를 접수
- 중재판정부의 중재인 전원 선정
- 제 42 조에 따른 예납금의 전액 납입

송달, 기한 및 서면제출

제 12 조

- (1) 중재신청서는 전자방식과 더불어 각 당사자, 각 당사자 및 사무국에 1 부씩 제공하기에 필요한 부수의 서면방식으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2) 기록이 중재판정부에 송부된 이후의 첨부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면 교신은 각 당사자와 각 중재인에게 중재판정부가 정한 방법으로 송부되어야 한다.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서면 교신을 전자방식으로 제출받는다.
- (3) 송달은 등기우편, 배달증명, 택배, 또는 전자방식, 또는 송부의 확인이 보장되는 다른 통신수단에 의해 보내진 경우 유효한 것으로 본다.
- (4) 송달은 서면이 의도한 수신인의 주소로서 송부의 확인이 보장되는 수단에 의해 최종으로 알려진 주소로 한다.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주소로서 송부의 확인이 보장되는 수단에 의해 최종으로 알려진 주소로 이루어진 송달은 당사자에 대한 유효한 송달로 본다.
- (5) 송달은 다음 일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1.1 수신자가 서면을 실제로 받은 일자, 또는
 - 1.2 동조 제 3 항에 의거한 경우, 수령 예정일자
- (6) 다수의 피신청인에 대한 중재신청서가 모든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될 수 없는 경우, 중재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피신청인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한 중재신청은 별개 절차로 다루어 진다..
- (7) 기한은 그 기한의 시작을 통지하는 각각의 서면 송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해당 일자가 송달지의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기한은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로부터 기산한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이 기간의 중간에 있더라도 기한의 기산이 중단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기한의 말일이 송달지의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기한은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에 만료한다.
- (8) 서면이 동조 제 3 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기한의 말일에 송부된 경우 그 서면과 관련한 기한은 준수된 것이다. 기한의 연장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 (9) 사무국은 절차종료(제 34 조) 이후 결정(제 35 조)내용을 제외한 사건의 모든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대리인

제 13 조

중재판정부의 중재 절차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선임한 자로 하여금 자신을 변호하게 하거나 그로부터 자문받을 수 있다. 사무국장 또는 중재판정부는 언제든지 당사자 대리인에게 대리권의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자의 인입 및 절차의 병합

제3자의 인입

제 14 조

(1)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 또는 제 3 자의 요청에 따라 제 3 자의 중재로의 인입 및 그 인입 방식에 대해 당사자 전원과 인입하려는 제 3 자의 의견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인입신청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1 제 3 자의 이름, 주소 및 기타 연락처

2.2 인입신청의 근거

2.3 제 3 자 인입 방식

(3) 제 3 자의 인입신청서가 중재신청서와 동시에 접수되는 경우,

3.1 이는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 7 조 이하의 규정들이 준용된다. 사무국장은 중재신청서를 인입신청을 한 제 3 자 및 다른 당사자들에게 송부하여 그들의 의견을 묻는다.

3.2 제 3 자는 중재인이 아직 선정되지 않은 경우 제 18 조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3.3 중재판정부가 동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중재신청서와 동시에 이루어진 인입신청을 거부할 경우, 는 중재신청서 및 제 3 자의 인입신청서를 사무국에 반송하여 별개의 절차로 다루어지도록 한다. 이 경우, 제 3 자가 동조 동항 2 호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참여하였다면 이사회가 기존의 모든 중재인 지명 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 17 조 이하의 규정들에 따라 새로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절차의 병합

제 15 조

(1) 청구의 기초가 되는 중재합의들 모두의 중재지가 동일하고 다음의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둘 또는 그 이상의 중재절차가 병합될 수 있다.

1.1 당사자들이 병합에 합의

1.2 동일한 중재인(들)이 지명 또는 선정된 경우

이사회는 당사자들과 기선정된 중재인들의 의견을 들은 후 절차의 병합여부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그 결정에 있어서 중재합의들 사이의 양립성 및 중재절차들 각각의 단계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황을 고려한다.

중재판정부

일반사항

제 16 조

(1) 당사자들은 자유로이 중재인들을 지명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특정 추가적 자격 요건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이상 완전한 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중재인이 될 수 있다. 중재인들은 당사자들과 계약관계를 가지며 당사자들에게 충실하여야 한다.

(2) 중재인들은 당사자들로부터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최선의 지식과 양심을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여타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들은 중재인 직에 있는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3) 중재인으로서 선정됨을 수락하려는 자는 그의 선정에 앞서 그의 (i) 공정성과 독립성, (ii) 수행가능성, (iii) 자격사항 (iv) 중재인 직의 수락, (v) 비엔나규칙의 준수를 확인하는 진술서를 서명하여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중재인은 그의 공정성, 독립성 또는 수행가능성에 관하여 의혹을 야기할 만한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과 충돌하는 모든 정황에 대해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그러한 정황에 대해 즉시 고지할 의무는 중재의 전 과정에서 지속된다.

(5) 이사회는 이사진들은 당사자들 또는 배석중재인들에 의해 중재인으로 지명될 수 있으나, 이사회에 의해 중재인으로 선정되지 못한다.

(6) 사무국장은 중재인들의 보수(제 44 조 제 2 항, 제 7 항 및 제 10 항)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인들의 절차경영(제 28 조 제 1 항)을 고려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구성

제 17 조

(1) 당사자들은 중재절차가 단독중재인에 회부될지 또는 3 인 중재인단에 회부될지에 관해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중재인들의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동조 제 2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이사회는 중재인의 수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이 단독중재인에 회부될지 또는 3 인중재인단에 회부될지에 관해 결정한다. 이사회는 그 결정을 함에 사건의 복잡도, 분쟁의 규모, 신속하고 비용효율적인 판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해를 고려한다.

(3) 분쟁이 단독중재인에 회부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사무국장의 통지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합의하여 한 명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그의 이름, 주소 및 기타 연락처를 고지하여야 한다. 지명이 그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사회가 단독중재인을 선정한다.

(4) 분쟁이 3 인 중재인단에 회부되는 경우, 각 당사자가 신청인은 중재신청서에,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에 1 인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당사자가 그러하지 못한 경우, 사무국장은 해당 당사자에게 중재인을 지명하여 그의 이름, 주소 및 기타 연락처를 해당 통지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고지할 것을 통지한다. 지명이 그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사회가 중재인을 선정한다.

(5) 분쟁이 3 인 중재인단에 회부되는 경우, 배석중재인들은 사무국장의 통지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합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지명하고 그의 이름, 주소 및 기타 연락처를 고지하여야 한다. 지명이 그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사회가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6) 사무국장 또는 이사회가 지명된 중재인을 확인함에 따라 당사자들은 자신의 중재인 지명에 구속된다 (제 19 조).

* 역자 주) 확인이란 비엔나국제중재센터가 당사자나 중재인들이 지명한 중재인 후보자를 승인하는 절차로서, 명백히 부적절한 중재인의 지명이 있는 경우 해당 중재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 19 조).

다수당사자 절차에서 중재판정부의 구성

제 18 조

- (1) 다수당사자 절차에서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제 17 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다음의 추가적 규정을 둔다.
- (2) 분쟁이 중재인단에 회부되는 경우, 신청인측 또는 피신청인측은 각 합의하여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 (3) 당사자가 중재인의 합동지명에 참여한 것이 다수당사자 중재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재판정부는 다수당사자 중재의 허용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요청이 있을 시 당사자 전원의 의견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정황을 고려하여 그에 대해 결정한다.
- (4) 동조 제 2 항에 따른 합동지명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사회가 해당 당사자/당사자들을 대신하여 중재인을 선정한다. 예외적인 경우 이사회는 당사자들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다음 이미 이루어진 선정을 취소하고 배석중재인들 또는 모든 중재인들을 새로 선정할 수 있다.

중재인 지명의 확인

제 19 조

- (1) 사무국장은 중재인의 지명이 이루어지면 제 16 조 제 3 항에 따라 해당 중재인의 진술서를 받는다. 사무국장은 그 진술서 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한다. 사무국장은 지명된 중재인이 중재인으로서의 공정성, 독립성과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면 이를 확인한다. 사무국장은 다음 이사회 회의에 그 확인내용을 보고한다.
- (2)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가 지명된 중재인의 확인여부를 결정한다.
- (3) 지명된 중재인은 확인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 (4) 사무국장 또는 이사회가 지명된 중재인의 확인을 거부한 경우, 사무국장은 중재인을 지명권한을 가진 당사자(들) 또는 배석중재인들에게 30 일 이내에 다른 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을 지명할 것을 통지한다. 제 16 조부터 제 18 조가 준용된다. 사무국장 또는 이사회가 새로 지명된 중재인의 확인을 거부할 경우, 지명권은 실효되고 이사회가 중재인을 선정한다.

중재인 기피

제 20 조

(1) 중재인은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하는 정황이 존재하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해 중재인으로서 선정된 이후 기피될 수 있다. 당사자는 그가 지명하였거나 지명에 참여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그 지명(참여) 이후에 알게 된 사유를 근거로 한해서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기선정된 중재인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은 그 기피의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기피신청은 기피의 원인이 된 사유를 명시하고 이를 입증하는 보강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기피의 대상이 된 중재인이 사임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가 그 기피신청에 대해 결정한다. 사무국장은 이사회 결정 전 기피의 대상이 된 중재인과 다른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을 요청한다. 이사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 역시 들을 수 있다. 모든 의견은 당사자들과 중재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4) 기피의 대상이 된 중재인을 포함한 중재판정부는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이 계류중일 때에도 중재를 속행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사회가 기피신청에 대해 판단할 때까지 중재판정을 내리지 못한다.

중재인 권한의 조기종료

제 21 조

(1) 중재인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조기종료한다.

- 1.1 당사자간의 그러한 합의
- 1.2 중재인의 사임
- 1.3 중재인의 사망
- 1.4 중재인에 대한 기피 인용결정
- 1.5 이사회에 중재인 해임

(2) 일방 당사자는 중재인이 일시적이지 않은 기간 동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부당한 지연없이 절차를 진행할 임무를 포함한 그의 임무를 달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재인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사무국에 해임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인의 무능이 일시적이지 않거나 중재인이 그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사회에 명백한 경우, 이사회는 당사자의 신청없이도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당사자들과 해당 중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해임여부를 결정한다.

중재인 권한의 조기종료의 효과

제 22 조

(1) 중재인의 권한이 조기종료하는 경우(제 21 조), 중재인은 교체되어야 한다. 대체 중재인의 선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선정절차에 따른다.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장은 다음에 따라 지명권한자에게 30 일 이내에 (동조 제 1.1 항과 1.2 항의 경우, 지명권한자들이 합의하여) 대체중재인을 지명하고, 지명된 중재인의 이름, 주소, 및 기타 연락처를 고지할 것을 요청한다.

1.1 단독중재인의 경우 당사자들

1.2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의 경우 배석중재인들

1.3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한 경우, 지명권을 가진 해당 당사자; 당사자를 대신하여 선정이 이루어졌던 경우, 해당 당사자

제 16 조부터 제 18 조는 준용된다. 지명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사회가 대체중재인을 선정한다. 대체중재인에 대한 기피가 인정된 경우(제 21 조 제 1.4 항) 대체중재인 지명권은 실효되고 위원회가 대체중재인을 선정한다.

(2) 제 21 조에 따라 중재인의 직이 조기종료하는 경우, 새로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의견개진을 요청한 후 앞선 중재절차들의 반복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한다.

(3) 중재인 직의 조기종료와 대체 중재인의 선정에 따른 비용에 대한 영향은 제 42 조 제 5 항과 제 44 조 제 10 항에 의거하여 판단된다.

전문가 기피

전문가 기피

제 23 조

제 20 조 제 1 항과 제 2 항은 중재판정부에 의해 선임된 전문가의 기피에 준용된다. 중재판정부가 그 기피에 대하여 결정한다.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제 24 조

(5)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의신청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 전까지 제기되어야 한다. 제 17 조에 따라 중재인을 지명하였거나 제 18 조에 따라 중재인 지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재판정부가 권한범위를 초과한다는 이의는 중재 과정에서 권한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발생할 시 지체없이 제기되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늦게 제기된 이의는 배척되어야 하나, 중재판정부가 그 지체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6)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을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관할권에 대한 판단은 본안판단과 함께 또는 별개로 가능하다.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당사자들의 비용 부담에 대해 결정한다.

중재 절차

중재지

제 25 조

(7) 당사자는 중재지에 관하여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중재지는 비엔나이다.

(1)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중재지의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

절차의 언어

제 26 조

당사자 사이 중재의 언어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중재판정부는 사건서류의 송부받은 후 지체없이 계약 언어를 비롯한 모든 정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중재 언어(복수 가능)를 결정한다.

준거법과 우의적 중재인

제 27 조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 사이 합의된 법규에 따라 평결한다.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에 대한 준거법 합의는 국제사법조항을 제외한 당해 국가의 실체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당사자들 사이 준거법에 대한 지정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법규를 적용한다.

(3)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부는 형평과 선의 원칙에 따라 또는 우의적 중재인으로서 평결한다.

중재의 진행

제 28 조

(1)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비엔나규칙과 당사자들의 합의내용에 의거하여 중재를 신속하고 비용효율적으로 진행하되 그외 재량에 따른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쌍방을 공정하게 대한다.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의견 표명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2) 중재판정부는 사전 공지를 통하여 특히 주장 및 증거의 제출과 증거제출요청 등이 오직 절차의 특정시점까지만 허용되도록 할 수 있다.

사실관계의 확인

제 29 조

- (1)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 시, 직권으로 증거 수집, 당사자 또는 증인 신문, 당사자에 대한 증거제출 요청, 또는 전문가 요청을 할 수 있다. 증거조사 및 특히 전문가 선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제 43 조가 적용된다.
- (2) 당사자가 불출석하더라도 중재절차는 속행된다.

구술심리

제 30 조

-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절차의 진행이 구두로 이루어질지 또는 서면에 의할지를 결정한다. 당사자간에 구술심리를 개최하지 않기로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적절한 절차의 단계에서 그러한 심리를 개최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청과 변론 및 증거절차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 표명의 기회를 가진다.
- (2) 구술심리 일자는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이 정한다. 심리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다.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은 심리의 요약과 결과를 담은 속기록을 준비하고 서명한다.

이의권

제 31 조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비엔나규칙 또는 절차에 적용되는 다른 법규 규정을 위반한 점을 알고 있다면 중재판정부에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당사자는 그의 이의권을 포기한것으로 본다.

심리의 종결

제 32 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서면과 증거를 제출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 받았다고 판단하는 즉시 중재판정의 본안에 대한 심리절차가 종료되었음을 명하고, 최종판정문의 선고예정일을 사무국장과 당사자들에게 알린다. 중재판정부는 언제든지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임시처분 및 보전처분 / 중재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제 33 조

-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시 사건서류를 송부받은(제 11 조) 다음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임시처분 또는 보전처분과 그러한 처분에 대한 수정, 중지, 또는 취소를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임시처분 또는 보전처분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견 표명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적절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국내법원에서 집행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2) 동조에 따른 임시처분 또는 보전처분의 결정은 서면에 의한다. 중재인이 2 인 이상인 중재의 경우 의장중재인의 서명만으로 유효하다. 만약 의장중재인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서명을 하는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의 서명의 부재 사유에 대해 기재함을 조건으로, 해당 중재인의 서명만으로 유효하다.
- (3)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임시처분 또는 보전처분의 결정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 결정에는 처분일자과 중재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 (4) 임시처분 또는 보전처분의 결정은 중재판정문(제 36 조 제 5 항)과 같은 방식으로 보관된다.
- (5) 동조 제 1 항부터 제 4 항의 규정들은 당사자들이 관할국가기관에 임시처분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가기관에 그러한 처분을 신청하거나 중재판정부가 명한 처분결정의 집행을 신청하더라도 중재합의에 대한 위반 또는 권리포기로 여겨지지 않으며, 중재판정부가 보유한 해당 권한도 유지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신청 및 이에 대해 국가기관이 취한 모든 조치를 사무국과 중재판정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 (6)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잠재적 비용의 잠재적 청구액을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충분한 정도의 개연성을 피신청인이 증명한다면 신청인에게 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을 판단할 때 모든 당사자들에게 의견 표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 (7) 중재판정부의 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명령을 당사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요청이 있을 시 절차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제 34 조 제 2 항 제 4 호).

절차의 종료 사유

제 34 조

중재절차는 다음의 각 경우에 종료된다.

(1) 판정(제 36 조 및 제 37 조 제 1 항)

(2) 다음 경우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명령

2.1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구하는 것이 피신청인에게 판정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2 당사자들이 중재의 종료에 합의하고 이를 중재판정부와 사무국장에 알리는 경우.

2.3 중재판정부가 절차의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특히 중재 당사자들이 중재의 종료 가능성을 최고한 중재판정부의 서면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더이상 지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2.4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제 33 조 제 7 항)

(3) 다음에 대한 사무국장의 선언

3.1 보정명령(제 7 조 제 3 항) 또는 납입명령(제 10 조 제 4 항 및 제 42 조 제 3 항과 제 5 항)의 불이행

3.2 동조 제 2 항 1 호부터 3 호의 경우로서 중재판정부에게 사건기록이 미송부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제 35 조

(1) 중재판정부에 의한 모든 중재판정문과 모든 결정은 중재인 전원의 과반수 의결을 요한다. 중재인들의 과반수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

(2) 배석중재인들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의장중재인은 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

제 36 조

- (1) 판정은 서면으로 한다. 중재판정문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전원이 서면으로 또는 구술심리에서 판정문이 근거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중재판정문에는 작성날짜와 중재지를 명기하여야 한다(제 25 조).
- (3) 모든 중재판정문 정본에는 중재인 전원이 서명한다. 일부 중재인이 서명하기를 거절하거나 합리적인 기간내에 극복할 수 없는 장애에 의해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중재인의 서명으로 유효하다. 중재판정이 과반수 결정이나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반대의견을 가진 중재인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명시한다.
- (4) 중재판정문의 모든 정본에는 비엔나규칙에 따라 선정된 한 명 또는 다수의 중재인에 의해 내려지고 서명된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판정문임을 확인하는 사무국장의 서명과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관인이 있어야 한다.
- (5) 사무국장은 중재판정문을 서면(제 12 조 제 3 항)으로 당사자들에게 송달하며, 제 12 조 제 4 항과 제 5 항이 송달의 효력과 일자에 적용된다.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중재판정문은 전자방식으로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으로 보내질 수 있다. 사무국은 중재판정문 원본 한 부를 보관하고, 송달을 증명하는 서류 역시 보관한다.
- (6)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단독중재인 내지 의장중재인 (유고시 다른 중재인), 또는 이들에게 지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중재판정문이 종국적이며 유효함을 모든 정본들에 확인한다.
- (7) 당사자들은 비엔나규칙에 동의함으로써 중재판정 내용을 준수하는데 동의한다.

화해중재판정

제 37 조

-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을 시 당사자들의 화해내용을 기재한 중재판정(제 36 조)을 내릴 수 있다.
- (2) 당사자들은 그들의 합의 내용을 중재판정부가 기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는 제 34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거하여 종료된다.

비용에 대한 결정

제 38 조

(1) 절차가 종료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 또는 별개의 판정문에 제 44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사무국장에 의해 결정된 중재비용을 기재하고, 제 44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당사자비용의 적정액과 제 44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기타 추가적 경비를 결정한다.

(2) 중재판정부는 누가 중재비용을 부담할지 또는 비용의 부담비율 역시 확정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부담을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동조에 따른 비용의 결정을 내릴 때 당사자들과 그들의 대리인들(제 13 조)의 행위, 특히 절차의 신속하고 비용효율적인 진행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다.

중재판정문의 정정, 해석 및 보충

제 39 조

(3) 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대한 다음의 신청들을 사무국에 제기할 수 있다.

3.1 중재판정문 상의 오산, 오타, 인쇄상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

3.2 중재판정문의 특정 쟁점에 대한 해석

3.3 중재에서 제기된 바 있으나 중재판정문에서 누락된 청구에 대한 추가 판정

(4) 중재판정부는 상기 신청에 대해 결정한다. 다른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견 표명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3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견 표명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중재판정부의 추가 경비와 수당과 관리비용(제 42 조 제 5 항)을 포괄하는 예납금을 결정할 수 있다. 중재인의 추가수당과 추가 관리비용은 사무국장의 자유재량으로 결정한다.

(5)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권으로 동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정정 또는 제 1 항 제 3 호의 보충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6) 제 36 조는 판정문의 보충에 적용된다. 정정 및 해석은 추록의 형식이어야 하며, 이는 중재판정문의 일부를 구성한다.

중재판정부로의 이송

제 40 조

국내법원이 절차를 중재판정부에 이송하는 경우, 비엔나규칙의 규정들이 중재절차에 준용된다. 사무국장과 이사회는 중재판정부가 이송의 필요사항에 따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중재판정부의 추가수당 및 추가 관리비용(제 42 조 제 5 항) 행정수수료의 예납을 결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문의 발간

제 41 조

이사회와 사무국장은 당사자가 중재판정문의 송달로부터 30 일 이내에 발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판정문을 요약 또는 발췌하여 구체적 정보를 표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률 학술지나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자체 출판물에 게재할 수 있다.

비용

예납

제 42 조

- (1) 사무국장은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예상 관리비용, 중재인들의 수당 및 경비를 결정한다. 당사자들은 납부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건기록이 중재판정부에 송부되기 앞서 예납금을 균분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수당사자 절차의 경우, 예납금의 절반은 신청인들이 연대하여, 나머지 절반은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동조에서 지칭되는 당사자란 신청인 측이건 피신청인 측이건 관련 모든 당사자들로 이해한다.
- (2) 당사자들은 비엔나규칙에 동의함으로써 동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상호 예납 의무를 균분하여 부담한다.
- (3) 사무국장은 일방 당사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분담 예납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전액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 30 일 이내에 해당 미납금을 납입하도록 요청한다. 미납당사자가 지는 동조 제 2 항에 따른 예납금의 자기분담의무는 이로부터 영향받지 않는다. 사무국장은 그 분담금이 정해진 기한 내에 납입되지 않는 경우(제 34 조 제 3 항에 의거) 절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청구를 추후 다른 절차에서 제기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당사자가 동조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자기분담 납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동조 제 3 항에 따라 그 분담액을 납입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납입당사자의 요청 시 해당 분쟁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납당사자로 하여금 분쟁에 대한 관할권의 범위내에서 납부당사자에게 판정 또는 그 외 적절한 방식으로 변제의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이는 중재판정부가 제 38 조에 따라 비용의 최종 분담을 결정하는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추가예납이 필요하며 사무국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동조 제 1 항부터 제 4 항에 규정된 절차가 준용된다. 추가예납이 이루어지기까지 원칙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예납비용의 증액 또는 추가를 초래한 청구에 대해서 다루지 아니한다. 사무국장에 의해 정해진 기한내에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하거나 사무국장이 중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제 34 조 제 3 항).

추가 절차비용의 예납

제 43 조

- (1) 중재판정부는 전문가, 번역가 또는 통역사의 선정, 절차의 속기록, 현장방문, 또는 심리장소의 변경과 같이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상의 특정단계가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사무국에 이를 알리고 예상비용이 마련되도록 주선한다.
- (2) 중재판정부는 예상비용이 충분히 마련된 경우에만 동조 제 1 항에 따른 절차상의 단계를 진행한다.
- (3) 중재판정부는 동조에 따른 예납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발생할 일련의 절차적 귀결들에 대해 결정한다.
- (4) 동조 제 1 항에 언급된 절차상의 단계들과 관련한 모든 지시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수행한다.

절차비용의 구성 및 계산

제 44 조

- (1) 절차비용은 다음의 각호로 구성된다.

1.1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관리비용,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중재인 수당과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경비(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의 보조인의 여행 및 체류비, 교신의 송달료, 임대료, 속기록 비용 등)

1.2 변호사 대리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비용과 같은 당사자들의 비용

1.3 특히 제 43 조 제 1 항에 나열된 중재와 관련된 기타 경비

(2) 사무국장은 분쟁금액에 기초하여 요금표(부칙 3)에 따라 관리비용 및 중재인수당을 산출하고 절차의 말미에 경비와 함께 이를 확정한다(동조 제 1 항 제 1 호). 사무국장은 절차의 단계를 고려하여 중재절차의 종료 전 중재인들에게 비용 지급을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동조 제 1 항 제 2 호와 제 3 호에 기재된 비용과 기타 경비를 결정하고 이를 중재판정에 명시한다(제 38 조).

(3) 사무국장은 분쟁금액을 확정하는데 있어, 당사자들이 일부청구만 한 경우 또는 당사자의 청구가 명백하게 과소평가되었거나 전혀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들의 계산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4) 중재에 셋 이상의 당사자가 연관된 경우, 부칙 3 에 명시된 관리비용 및 중재인수당의 금액은 최대 50 퍼센트 이내에서 각 추가 당사자마다 10 퍼센트씩 인상된다.

(5) 반대청구 및 제 3 자의 인입신청에 따른 관리비용 및 중재인수당은 사무국장이 산정하고,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한다.

(6) 주청구에 대한 상계의 방식으로 제기된 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청구가 상당한 추가적 업무부담을 요하는 범위에서 별도의 관리비용 및 중재인수당이 산정되고 납부되어야 한다.

(7) 부칙 3 에 명시된 중재인수당은 단독중재인에 적용된다. 중재인단을 위한 총 수당은 단독중재인 수당의 2.5 배이다. 사무국장은 특히 복잡한 경우 또는 절차가 특히 신속하게 진행된 경우 중재인수당을 요금표(부칙 3)에 대한 최대 40 퍼센트까지 재량으로 인상할 수 있다. 반대로, 절차의 비효율적으로 진행에 대하여 사무국장은 최대 40 퍼센트 내에서 중재인수당을 삭감할 수 있다.

(8) 부칙 3 에 명시된 요금은 관할권에 대한 판정, 일부판정, 전문가에 대한 기피결정, 보전 또는 임시 처분의 지시와 중재판정의 취소절차 속 추가적 절차를 포함한 기타 결정, 및 절차명령과 같은 모든 일부 또는 임시결정을 포함한다.

(9) 분쟁금액의 감축은 그 감축이 사건기록이 중재판정부에 송부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관리비용과 중재인수당의 산정에 고려된다.

(10) 절차 혹은 중재인의 직무가 조기종료되는 경우, 사무국장은 절차종료 당시의 절차 진행단계를 고려하여 자유재량으로 중재인수당을 삭감할 수 있다.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 동일한 본안에 관한 비엔나규칙에 따른 절차가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의 이전, 진행 중, 또는 이후에 개시된 경우, 사무국장은 중재인들의 수당 산정에 관하여 이 조항을 준용한다

(11)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 동일한 본안에 관한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가 비엔나규칙에 따른 중재절차의 이전, 진행 중, 또는 이후에 개시된 경우, 전순 절차의 관리비용은 후순으로 개시된 절차의 관리비용에서 삭감된다.

(12) 부칙 3 에 명시된 요금은 중재인수당에 적용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신의 수당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중재인들은 그 직을 수락하면서 사무국장에게 예상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알려야 한다.

기타 규정

신속절차

제 45 조

(1) 신속절차에 대한 보충규정들은 당사자들이 이를 중재합의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그 적용에 추후 합의한 경우에 적용된다. 신속절차에 대한 그러한 당사자합의는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의 제출보다 선행하여야 한다.

(2) 신속절차 규정들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다음의 내용들과 함께 비엔나규칙의 일반 조항들이 적용된다.

(3) 제 42 조에 따른 예납의 납부기한은 15 일로 줄어든다.

(4) 반대청구나 상계청구는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의 제출기한의 만료까지만 가능하다.

(5) 당사자들이 달리 중재인단에 합의하지 않는 한, 신속절차는 단독중재인에 의해 진행된다.

(6) 분쟁이 단독중재인에 회부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사무국장의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합의하여 단독중재인을 지명한다. 당사자들이 그 기한내에 단독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면 이사회가 단독중재인을 선정한다.

(7) 분쟁이 3 인 중재인단에 회부되는 경우, 신청인은 중재신청서에 중재인을 지명한다. 피신청인은 사무국장의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한다. 당사자들에 의해 지명된 배석중재인들은 사무국장의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의장중재인을 지명한다. 중재인이 그 기한내에 지명되지 못하면 이사회가 중재인을 선정한다.

(8) 중재판정부는 절차가 조기종료되지 않는 한,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6 개월 내에 최종 중재판정을 내린다. 사무국장은 중재판정부의 합리적 요청 또는 그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판정의 기한을 넘기더라도

중재합의가 무효가 되거나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9) 중재는 중재판정부가 사건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내에 최종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다음의 조항들이 적용된다.

9.1 중재신청서와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의 제출 이후에, 당사자들은 1 회에 한하여 추가로 서면을 교환할 수 있다.

9.2 당사자들은 모든 사실관계에 관한 논쟁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서면증거를 이에 첨부한다.

9.3 당사자들에 의해 요청되거나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중재판정부는 모든 증거가 제출되고 법적 쟁점이 다루어지도록 1 회의 구술심리기일을 열어야 한다.

9.4 구술심리 이후에는 어떠한 서면도 제출할 수 없다.

면책

제 46 조

중재인들, 사무국장, 부사무국장, 이사회 및 그 이사진들, 오스트리 연방경제회의소 및 그 임직원은 중재와 관련된 모든 작위와 부작위에 대하여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책임에서 면제된다.

경과규정

제 47 조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본 비엔나규칙은 2017 년 12 월 31 일 이후에 개시되는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

제II장



조정규칙

비엔나조정규칙 | 2018 년 1 월 1 일 시행

제II장: 조정규칙 (“비엔나조정규칙”)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기능과 비엔나조정규칙의 적용

제1조

(1) 비엔나국제중재센터(약칭 “VIAC”)는 오스트리아 연방경제회의소² 산하의 상설 국제중재 대표기구이다. 비엔나국제중재센터는 국내 및 국제중재 외에 다음에 대한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을 시 다른 대안적분쟁해결 조치에 따른 절차를 사무관리한다.

1.1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중재규칙(“비엔나규칙”)

1.2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조정규칙(“비엔나조정규칙”)

1.3 그 외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권한

(2) 당사자들이 분쟁의 발생 전 또는 후에 언제든지 그 분쟁을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절차 개시 당시 시행 중인 비엔나조정규칙이 적용된다.

(3) 당사자들 전원의 서면 합의를 통해 비엔나조정규칙과 다른 수정내용에 합의할 수 있다. 조정인 선정 이후의 모든 수정사항은 조정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

(4) 이사회는 당사자들간 합의한 비엔나조정규칙에 대한 수정내용이 비엔나조정규칙으로부터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절차의 사무관리를 거부할 수 있다.

(5) 비엔나조정규칙이 특정사항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엔나규칙이 비엔나조정규칙과 양립가능한 선에서 준용된다. 특히 비엔나규칙의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12 조, 및 제 13 조가 해당된다.

정의

제2조

(1) 비엔나조정규칙에서

1.1 **절차**는 조정, 당사자들에 의해 선택된 그 외 모든 대안적 분쟁해결방법, 또는 달리

² 경제회의소에 대한 연방법령(“Wirtschaftskammergesetz 1998”), 연방법관보 I 1998 년 제 103 호(연방법관보 I 2017 년 73 호에 따라 수정), 제 139 조 제 2 항에 의거

중립적 제 3 자가 재청하고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분쟁해결방법들의 결합을 말한다.

1.2 중립적 제 3 자는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을 돕는 조정인, 컨실리에이터, 또는 그 외 1 인 또는 그 이상의 중립적 제 3 자를 말한다. 모든 중립적 제 3 자를 지칭하기 위해 “조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3 당사자는 비엔나조정규칙에 그들의 분쟁을 회부하기로 합의하거나 합의하였던 1 인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을 말한다.

1.4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의 유고시 또는 사무국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로 사무부국장이 결정을 내리는 범위에서 사무부국장 역시 포함한다.

(2) 비엔나조정규칙에서 자연인을 지칭하는 모든 용어들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된다. 실무에서 이 규칙의 용어들은 해당 성별에 맞게 사용한다.

(3) “조항”에 대한 참조에 구체적 세부내용이 없는 경우 비엔나조정규칙의 관련 조항이 해당된다.

절차의 개시

제3조

(4) 절차는 신청서의 제출로 개시된다. 당사자들이 분쟁을 비엔나조정규칙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절차는 비엔나국제중재센터 사무국 또는 오스트리아지역경제회의소에 신청서가 서면방식 혹은 전자방식(비엔나규칙 제 12 조 제 1 항)으로 접수된 일자에 개시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절차는 당사자들의 의해 추후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일자에 개시된다.

(5) 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1 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및 기타 연락처

5.2 사실관계과 분쟁의 간략한 설명

5.3 분쟁 금액

5.4 지명된 조정인의 이름, 주소 및 기타 연락처, 또는 조정인으로 선정될 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

5.5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합의의 상세 사항 또는 제안 사항; 특히

- i. 조정인의 수
- ii. 절차에 사용될 언어(들)

(6) 사무국장은 신청서의 접수를 당사자들에게 알리며 신청서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당사자들이 합동하여 신청서를 제기한 경우가 아닌 한 기한을 정하여 의견 표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등록비용

제4조

- (1) 분쟁을 비엔나조정규칙에 회부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부칙 3 에 따라 제경비를 제외한 등록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추후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등록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중재에 셋 이상의 당사자가 연관된 경우, 등록비용은 최대 50 퍼센트 이내에서 각 추가 당사자마다 10 퍼센트씩 인상된다.
- (3) 등록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등록비용은 납부당사자의 예납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4)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 동일한 본안에 관한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가 비엔나규칙에 따른 중재절차의 개시 전, 진행 중, 또는 이후에 개시된 경우, 후순으로 개시된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6) 사무국장은 필요시 등록비용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입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무국장은 절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장소

제5조

조정인은 진행되는 혹은 병행 중인 중재절차와 무관하게 당사자들과 상의하고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조정세션 장소를 결정한다. 조정인은 그의 판단에 따라 매 세션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열 수 있다.

절차의 언어

제6조

조정인은 사건서류를 송부(제 9 조 제 1 항)받은 후 지체없이 당사자들과 상의하고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절차에 사용할 언어를 결정한다.

조정인 선정

제 7 조

- (1) 조정인 또는 조정인의 선정방식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 부재 시, 사무국장은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들에게 합동으로 조정인을 지명하고 조정인의 성명, 주소 및 기타 연락처를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 (2) 사무국은 1 인 혹은 그 이상의 인물들을 추천하여 그 중 1 인 또는 그 이상의 조정인을 당사자들이 합동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합동 조정인지명을 지원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합동으로 조정인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이사회가 조정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조정인의 자격조건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제의를 최대한 고려한다.
- (3) 이사회의 조정인 선정 또는 지명된 조정인의 확인에 앞서, 조정인은 사무국장에게 그의 (i) 공정성과 독립성, (ii) 수행가능성, (iii) 자격사항, (iv) 조정인 직의 수락, (v) 비엔나조정규칙의 준수를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인은 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의혹을 야기할 만한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과 충돌하는 모든 정황에 대해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조정인의 이러한 공개의무는 절차의 전 과정에서 지속된다. 사무국장은 그러한 진술서 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하고 의견 표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 (4) 조정인으로서의 공정성과 독립성 및 직무 수행을 위한 자격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면 이사회가 해당 조정인을 선정 또는 사무국장이 지명된 조정인을 확인한다.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지명된 조정인의 확인여부를 결정한다. 지명된 조정인은 확인받음으로써 선정된다.
- (5) 조정인의 확인이 거부되거나 또는 조정인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제 1 항부터 제 4 항이 준용된다.

예납과 비용

제 8 조

- (1) 사무국장은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예상 관리비용, 조정인 수당에 대한 선금(부가가치세 가산) 및 예상 경비 (조정인의 여행 및 체류비, 송달료, 임대료 등)에 대한 1 차 예납금을 결정한다. 당사자들은 사건기록이 조정인에게 송부되기에 앞서 사무국장이 정한 기한 내에 1 차 예납금을 납부한다.
- (2)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예납금은 당사자들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사무국장은 일방 당사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분담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전액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해당 미납부 예납금을 임의로 부담할 수 있다. 그 부담금이 정해진 기한내에 납입되지 않은 경우, 조정인이 절차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하거나 사무국장이 절차를 종료 할 수 있다(제 11 조 제 1 항 제 5 호).

(3) 추가예납이 필요하며 사무국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로서 특히 조정인의 수당과 예상 경비를 부담하기 위할 때 동조 제 2 항이 준용된다.

(4) 절차의 종료 시, 사무국장은 관리비용과 조정인수당을 산출하고 경비와 함께 이를 확정한다.

(5) 관리비용은 분쟁금액에 기초하여 요금표(부칙 3)에 따라 산정한다. 사무국장은 분쟁금액을 확정하는 데 있어, 당사자들이 명백하게 과소평가하였거나 전혀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들의 계산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절차에 셋 이상의 당사자가 연관된 경우, 부칙 3에 명시된 관리비용의 금액은 최대 50퍼센트 이내에서 각 추가 당사자마다 10퍼센트씩 인상된다.

(6) 조정인의 수당은 시간당 혹은 일당 요율에 따라 실제 소요된 시간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요율은 조정인의 선정 또는 확인 시에 조정인과 당사자들과 협의 후 사무국장이 확정한다. 사무국장은 비용의 적정성과 분쟁의 복잡성을 고려한다. 당사자들과 조정인 사이 별도의 수당에 관한 협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7) 당사자 간에 달리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은 법적대리 비용을 포함한 기타 소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8)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 동일한 본안에 관한 비엔나규칙에 따른 중재절차가 비엔나조정 규칙에 따른 절차의 이전, 진행 중, 또는이후에 개시된 경우, 전순 절차의 관리비용은 후순으로 개시된 절차의 관리비용에서 공제한다.

절차의 진행

제 9 조

(1) 사무국장은 다음의 각 사항들이 모두 완료된 이후 기록을 조정인에 송부한다.

- 제 3 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 조정인의 선정
- 제 8 조 제 1 항에 따른 1 차 예납금의 전액 납입

(2) 조정인은 지체없이 절차진행의 방식에 대하여 당사자들과 상의한다. 조정인은 당사자들이 분쟁에 대한 수용가능하고 만족스러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조정인은 절차의 진행을 주도하되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사항이 절차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3) 절차는 대면 혹은 화상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조정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조정인은 이를 조력할 수 있다. 모든 당사자는 조정인과의 모든 기일에 직접 참석하거나 또는 적법히 선정되고 분쟁의 합의권을 위임받은 사람에 의해 대리되어야 한다.

(4) 당사자들은 절차의 전 과정에서 양심적이고, 공정하며, 예의바르게 임한다. 제 11 조 제 1 항 제 5 호에 의해 절차가 조기종료되지 않는 한, 모든 당사자는 조정인과의 기일에 최소한 1 회 참석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5) 조정인과의 기일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다.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다음에 한한다.

- 조정인
- 당사자들
- 그의 참석을 해당 기일 이전 기한에 맞게 조정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리고, 제 12 조에 따른 비밀유지서약을 서면으로 서명한 제 3 자

(6) 조정인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없이 일방 당사자와 회담을 가질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를 명시적으로 포기하고 조정인이 해당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조정인은 상대방 당사자의 부재 중 일방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절차의 병행

제 10 조

당사자는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것과 상관없이, 동일한 분쟁에 관한 재판, 중재, 또는 여타 절차를 개시하거나 이미 계류된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절차의 종료

제 11 조

(1) 사무국장이 다음 각 호 중 하나가 가장 먼저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서면 확인함으로써 절차는 종료한다.

1.1 당사자들이 분쟁 전체에 대한 합의

1.2 조정인과 최소 한번의 조정기일이 열렸거나, 조정인의 선정 이후 2 개월 이내에 한번도 기일이 열리지 않았거나, 또는 절차를 위해 협의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일방 당사자가 해당 절차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서면을 조정인 또는 사무국장에게 제출

1.3 조정인이 해당 절차에서 당사자들 사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당사자들에게 서면고지

1.4 조정인이 절차의 종료를 당사자들에게 서면고지

1.5 다음에 관해 사무국장이 서면고지

i. 제 7 조 제 1 항부터 제 4 항에 의거한 조정인의 선정의 실패

ii. 납부 명령(제 4 조 및 제 8 조)의 기한내 미준수

(2) 동조 제 1 항에 명시된 절차의 종료 사유 중 하나가 오직 분쟁의 일부에만 해당하는 경우, 절차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종료될 수 있다.

(3) 동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제 4 호 및 제 2 항의 경우, 조정인은 절차종료의 정황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비밀유지, 증거능력 및 후속절차에서의 대리

제 12 조

(1) 제 9 조 제 5 항에 열거된 자들은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알게 되거나 그 절차가 아니었다면 알게 되지 않았을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2) 해당 절차를 통하여 취득하거나 그와 무관하게는 취득하지 않았을 모든 문서는 후속 재판, 중재 또는 여타 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해당 절차 상의 모든 진술, 의견, 제안이나 자백과 더불어 어느 당사자의 분쟁 합의의사도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조정인은 상기 내용들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는다.

(3)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의무는 달리 해당 절차의 준거법이 국가의 강행규범을 포함하거나 해당 절차를 종료를 위한 합의의 이행 또는 집행에 요구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거나,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은 비밀유지 사항이 아니다.

(5) 조정인은 절차의 본안을 구성하거나 또는 구성했던 분쟁과 관련된 재판, 중재, 또는 여타 절차에서 당사자들을 변호사로서 또는 그 외 자격으로 대리하거나 달리 자문할 수 없다.

면책

제 13 조

조정인, 사무국장, 부사무국장, 이사회와 이사진, 및 오스트리아연방경제회의소와 임직원은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와 관련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책임에서 면제된다.

경과규정

제 14 조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본 비엔나조정규칙은 2017 년 12 월 31 일 이후에 개시된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

제III장



부칙

중재규칙 및 조정규칙의 부칙

제III장: 중재규칙과 조정규칙의 부칙³

부칙 1.....

표준조항

표준중재조항

계약의 유효성, 위반, 해지 또는 무효에 관한 분쟁을 포함한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혹은 청구는 오스트리아연방경제회의소 산하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중재규칙(비엔나규칙)에 의거 선정된 1 인 또는 3 인의 중재인에 의해 종국적으로 해결된다.

중재조항에 대한 보충적 합의 가능사항:

- (1) 중재인의 수 (1 인 또는 3 인) (비엔나규칙 제 17 조)
- (2) 중재절차에 사용될 언어(들) (비엔나규칙 제 26 조)
- (3) 계약관계에 적용되는 실체법과 중재합의에 적용될 실체법(비엔나규칙 제 27 조) 및 절차에 적용될 규칙(비엔나규칙 제 28 조)
- (4) 신속절차의 규정들의 적용(비엔나규칙 제 45 조)
- (5) 중재인들의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비엔나규칙 제 16 조)와 이에 대한 당사자들, 대리인들과 전문가들에 관한 적용범위의 확대

³ 부칙 1 에서 4 는 중재규칙과 조정규칙의 일부를 구성한다.

표준조정조항

조정표준조항 1:

계약의 유효성, 위반, 해지 또는 무효에 관한 분쟁을 포함한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혹은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오스트리아연방경제회의소 산하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조정규칙(비엔나조정규칙)에 의거한 절차를 함께 고려할 것에 합의한다.

조정표준조항 2:

계약의 유효성, 위반, 해지 또는 무효에 관한 분쟁을 포함한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혹은 청구는 오스트리아연방경제회의소 산하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조정규칙(비엔나조정규칙)에 의거한 절차에 먼저 회부된다.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의 개시로부터 [60]일¹ 기간안에 분쟁이나 청구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는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중재규칙(비엔나규칙)에 의거 선정된 1 인 또는 3 인의 중재인에 의해 종국적으로 해결된다.²

1 또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다른 기간

2 중재조항에 대한 보충적 합의 가능사항 참조

조정표준조항 3: 현 분쟁을 조정으로 회부할 의무

당사자들은 현 분쟁을 오스트리아연방경제회의소 산하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조정규칙(비엔나조정규칙)에 의거한 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절차는 당사자들의 합동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등록비용은 당사자들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조정조항에 대한 보충적 합의 가능사항:

- (1) 조정인 또는 그 외 중립적 제 3 자의 수 (1 인 또는 2 인)
- (2) 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들) (비엔나조정규칙 제 6 조)
- (3) 계약관계에 적용되는 실체법, 조정합의에 적용될 실체법, 및 절차에 적용될 실체법(비엔나조정규칙 제 1 조 제 3 항)
- (4) 병행절차들의 허용여부(비엔나조정규칙 제 10 조)
- (5) 소멸시효의 해석 또는 특정 기한에 대한 소멸시효의 포기

부칙 2.....

이사회의 내규

- (1) 이사회의 회의는 회장에 의해 소집되고, 그 또는 부회장에 의해 주재된다.
- (2) 이사회는 이사진 삼분의 일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 정족수를 충족한다. 전화 또는 영상회의와 인터넷을 통한 참가도 출석으로 유효하다.
- (3) 이사회는 투표권을 가진 재임 이사진들의 단순 다수결로 결정한다. 찬반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4) 2 인의 부회장 모두 유고 시, 회장의 직무는 최장 재직 위원이 수행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사진으로서 최장 재임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5) 비엔나국제중재센터에 의한 중재에 어떤 자격으로건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위원은 해당 절차와 관련한 심의나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출석하거나 참여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위원회의 정족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6) 회람결정은 허용된다. 이 경우, 회장은 서면제안을 이사진들에게 전달하고 서면투표의 기한을 정한다. 본 부칙 제 2 항과 제 3 항이 준용된다. 각 위원은 서면제안에 관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 (7) 이사회는 결정의 이유에 대해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부칙 3

요금표

등록비용¹

분쟁금액(유로)		요금(유로)
이상	이하	
	25,000	500
25,001	75,000	1,000
	75,000 초과	1,500

관리비용²

분쟁금액(유로)		요금(유로)
이상	이하	
	25,000	500
25,001	75,000	1,000
75,001	100,000	1,500
100,001	200,000	$3,000 + 1.875\% \times (\text{분쟁금액} - 100,000)$
200,001	500,000	$4,875 + 1.250\% \times (\text{분쟁금액} - 200,000)$
500,001	1,000,000	$8,625 + 0.875\% \times (\text{분쟁금액} - 500,000)$
1,000,001	2,000,000	$13,000 + 0.5\% \times (\text{분쟁금액} - 1,000,000)$
2,000,001	5,000,000	$18,000 + 0.125\% \times (\text{분쟁금액} - 2,000,000)$
	5,000,000 초과	$21,750 + 0.063\% \times (\text{분쟁금액} - 5,000,000)$ 최대 75,000 (21,750 + 53,250)

단독중재인 수당³

분쟁금액(유로)		요율(유로)
이상	이하	
	100,000	6%, 최소 수당: 3,000
100,001	200,000	$6,000 + 3.00\% \times (\text{분쟁금액} - 100,000)$
200,001	500,000	$9,000 + 2.50\% \times (\text{분쟁금액} - 200,000)$
500,001	1,000,000	$16,500 + 2.00\% \times (\text{분쟁금액} - 500,000)$
1,000,001	2,000,000	$26,500 + 1.00\% \times (\text{분쟁금액} - 1,000,000)$
2,000,001	5,000,000	$36,500 + 0.60\% \times (\text{분쟁금액} - 2,000,000)$
5,000,001	10,000,000	$54,500 + 0.40\% \times (\text{분쟁금액} - 5,000,000)$
10,000,001	20,000,000	$74,500 + 0.20\% \times (\text{분쟁금액} - 10,000,000)$
20,000,001	100,000,000	$94,500 + 0.10\% \times (\text{분쟁금액} - 20,000,000)$
	100,000,000 초과	$174,500 + 0.01\% \times (\text{분쟁금액} - 100,000,000)$

¹ 비엔나규칙 제 10 조, 비엔나조정규칙 제 4 조 참조

² 비엔나규칙 제 44 조 제 2 항 및 제 4 항, 비엔나조정규칙 제 8 조 제 5 항 참조

³ 특히 비엔나규칙 제 44 조 제 2 항, 제 4 항, 제 7 항 및 제 10 항

부칙 4

선정권자로서의 비엔나국제중재센터

비엔나국제중재센터가 선정권자로 요청된 경우, 그 요청자는 매 요청마다 2,000 유로의 반환불가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요청은 요금의 총액이 완납된 후에만 진행된다.



**VIAC – Vienna International Arbitral Centre
of the Austrian Federal Economic Chamber**
Wiedner Hauptstrasse 63, A-1045 Vienna, Austria

T +43 (0)5 90 900 4398
F +43 (0)5 90 900 216
E office@viac.eu

www.viac.eu
